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84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365호지방도35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06

고양시 고시
제2025-375호

도로명주소 고시

107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773호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09

고양시 공고
제2025-2780호도시계획시설[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19

고양시 공고
제2025-2781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1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23

고양시 공고
제2025-2782호도시계획시설[소로3-507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28

고양시 공고
제2025-2783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34

고양시 공고
제2025-2784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83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38

고양시 공고
제2025-2786호도시계획시설[중로2-원1호선 외
1개노선(박재궁취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43

고양시 공고
제2025-2798호도시계획시설[대로3-33호선(고양~광탄간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48

고양시 공고
제2025-2804호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52

고양시 공고 제2025-284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나.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3).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으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
표 3과 같다.

제3조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에서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2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제1호 근거법규란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별표 2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2호 단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1호 단위사무명 제5호란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안영선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송대호
	담당자 성명·전화	윤승희 (031-8075-2395)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 · 훈계·주의) 처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시민안전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영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재난대응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	1. 수강료의 부과 및 징수 2. 수강료의 감면 3. 수강료의 반환	•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3

[행정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청원경찰 배치	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인적자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개방형 직위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 같은 영 제1조의4

[주민자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	· 「행정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일자리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 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보고 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제50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담배 소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 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3. 직권말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 같은 법 제12조
3.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통신판매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직권 말소 3. 조사 및 감독 4.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1조, 제45조

[세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개별주택가격 검증 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 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3. 보장비용의 징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독촉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지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같은 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가족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건강진단 실시 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변경·휴지·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 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 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 「노인복지법」 제27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 2.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 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4. 청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6. 과태료 7. 과징금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3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보육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	· 「아동복지법」 제66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제61조 ·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등 신고 -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34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 「아동복지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환경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양환경보전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 손실보상 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5. 토양오염검사의 통보 등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7. 행위제한(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명령) 8.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 9. 과태료 부과·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기후에너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 운행 규제 요청 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 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 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명령·통행규제 7. 과태료 부과·징수 8. 특정공사 사전 신고 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1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4조, 제25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자원순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정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3.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업무 5.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6.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 7.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정한다)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 •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6. 보고 및 검사 등 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부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처리 1.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 2. 개방화장실 지정 3. 보조금 지급 4. 보고 등	제41조까지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식품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영업허가 신청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은 제외)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같은 법 제8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검사·수거 등) 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부정·불량 식품의 지도·단속 5. 무허가·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단속 (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3. 벌칙 4. 과태료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단속(출입·검사·수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1. 지정명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폐기처분 등 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품목 등 제조정지 5. 폐쇄조치 등 6. 과징금 처분 7. 위반사실 공표 8. 벌칙 9. 과태료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등 관리 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벌칙 5.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제21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6.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신고 2. 실태조사 3. 이행조치명령 4. 과태료 5. 벌칙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7조

[문화예술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 2. 재해예방조치 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 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폐업 및 직권말소 3.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 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 5. 영화상영의 제한 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승계신고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90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6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 같은 법 제3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직권말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38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6.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7.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10.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31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유원시설업	1. 테마파크업 허가신청 2.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 벌칙 6. 양벌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85조

[체육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3. 회원의 모집 및 보호 4. 시정명령 5. 행정처분 6. 청문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8. 수수료 징수 9. 과태료 부과·징수 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 3. 관리비 및 회계운영 4. 시설 관리(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건축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다만, 증축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다만,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 3. 건축물대장 발급 4. 등기촉탁	· 「건축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11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업무 3. 용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같은 법 제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6. 빈 건축물 정비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토지정보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3.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1.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과태료	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 이행강제금 부과 3. 위반사실 확인조사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 개별공시지가 검증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 수사무에 관한 권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 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3.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이륜차 동차 포함) ·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차량 지 도·단속 · 등록번호판 훼손차량 지도·단속 · 등록번호판 봉인의 멸실·훼손 지도·단속 · 등록증 미비차량 지도·단속 · 그 밖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불법 부착물 지도·단속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84조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전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3. 그 밖에 주차·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	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 같은 법 제19조의13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 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제61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원상회복 2. 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제73조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하는 권한	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 제63조 ·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 「도로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1. 노상적치물 정비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 같은 법 제11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다음의 권한	3. 변상금의 징수 4. 원상회복 5. 행정대집행 6.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정한다) 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3. 청문의 실시	· 「도로법」 제36조 ·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 개설허가 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3. 처분 및 조치	· 「사도법」 제4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개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GB 제외)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공작물의 설치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불법 개발행위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133조

[농업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신고 2. 농지전용 변경신고 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 4. 농지전용신고의 취소 5. 농지전용신고의 용도변경 승인 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	· 「농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제4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 2.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6.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사후관리	· 「농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41조의3, 제42조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 2.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녹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점용료의 징수 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49조,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 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목벌채 허가 2. 입목벌채 신고 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 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 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 4. 사상자 보상금 지급 5. 입산허가 6. 방화 및 실화범 처벌 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 같은 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67조 · 「산림보호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 같은 법 제79조

[생태하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관리 2.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허가 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4. 준설, 굴착허가 5. 인수 및 수주허가 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 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9. 그 밖의 점용허가 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2. 소하천의 점용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허가의 제한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2. 주민의견의 청취	· 같은 법 제11조
	3. 토지 등의 수용	· 같은 법 제12조
	4. 원상회복 의무	· 같은 법 제16조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7. 허가의 실효	· 같은 법 제20조
	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9. 점용료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22조
	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24조
	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3조
	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3. 소요공사비의 예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4. 점용 등의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사용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별표 3]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시민봉사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	· 같은 법 제6조의2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같은 법 제6조의3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	· 같은 법 제6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장이</u>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고양시장</u>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 ----- ----- -----.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u>시장</u> 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감독)----- --- <u>시장 또는 구청장</u> ----- ----- ----- -----.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행정지원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2. (생략)</td><td></td></tr><tr><td>2. (생략)</td><td>1. (생략)</td><td></td></tr><tr><td><신설></td><td></td><td></td></tr></table> [인적자원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구간 전보 제외)</td><td>(생략)</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2. (생략)		2. (생략)	1. (생략)		<신설>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구간 전보 제외)	(생략)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행정지원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현행과 같음)</td><td>1.·2.(현행과 같음)</td><td></td></tr><tr><td>2.(현행과 같음)</td><td>1.(현행과 같음)</td><td></td></tr><tr><td>3. 기록물관리 전산화</td><td>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td><td>·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td></tr></table> [인적자원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1. -----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 -----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2. (생략)																																				
2. (생략)	1. (생략)																																				
<신설>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구간 전보 제외)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 -----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신 설>			2. ----- -----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개방형 직위 제외) ·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 같은 영 제1조의4								
<신 설>			[주민자치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td><td>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td><td>·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현행			개정안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3. (생략) 4. <u>본인부담 급여</u>	·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지원</u>	·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u>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1. (생략) 2. (생략)	· 「 <u>긴급복지지원법</u> 」 <u>제9조, 제15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u>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9조, 제15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u> <u><삭제></u>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4. (현행과 같음)		
10. (생략)			5. (현행과 같음)		
11. (생략)			6. (현행과 같음)		
12. (생략)			7. (현행과 같음)		
13. (생략)			8. (현행과 같음)		
14. (생략)			9. (현행과 같음)		
15. (생략)			10. (현행과 같음)		
16. (생략)			11. (현행과 같음)		
17. (생략)			12. (현행과 같음)		
18. (생략)			13. (현행과 같음)		
19. (생략)			14. (현행과 같음)		
20. (생략)			15. (현행과 같음)		
21. (생략)			16. (현행과 같음)		
22. (생략)			17. (현행과 같음)		
23. (생략)			18. (현행과 같음)		
24. (생략)			19. (현행과 같음)		
25. (생략)			20. (현행과 같음)		
26. (생략)			21. (현행과 같음)		
27. (생략)			22. (현행과 같음)		
28. (생략)			23. (현행과 같음)		
29. (생략)			24. (현행과 같음)		
30. (생략)			25. (현행과 같음)		
31. (생략)			26. (현행과 같음)		
32. (생략)			27. (현행과 같음)		
33. (생략)			28. (현행과 같음)		
34. (생략)			29. (현행과 같음)		
35. (생략)			30. (현행과 같음)		
36. (생략)			31. (현행과 같음)		
37. (생략)			32. (현행과 같음)		
38. (생략)			33. (현행과 같음)		
39. (생략)			34. (현행과 같음)		
40. (생략)			35. (현행과 같음)		
41. (생략)			36. (현행과 같음)		
42. (생략)			37. (현행과 같음)		
43. (생략)			38. (현행과 같음)		
44. (생략)			39. (현행과 같음)		
45. (생략)			40. (현행과 같음)		
46. (생략)			41. (현행과 같음)		
47. (생략)			42. (현행과 같음)		
48. (생략)			43. (현행과 같음)		
49. (생략)			44. (현행과 같음)		
50. (생략)			45. (현행과 같음)		
51. (생략)			46. (현행과 같음)		
52. (생략)			47. (현행과 같음)		
53. (생략)			48. (현행과 같음)		
54. (생략)			49. (현행과 같음)		
55. (생략)			50. (현행과 같음)		
56. (생략)			51. (현행과 같음)		
57. (생략)			52. (현행과 같음)		
58. (생략)			53. (현행과 같음)		
59. (생략)			54. (현행과 같음)		
60. (생략)			55. (현행과 같음)		
61. (생략)			56. (현행과 같음)		
62. (생략)			57. (현행과 같음)		
63. (생략)			58. (현행과 같음)		
64. (생략)			59. (현행과 같음)		
65. (생략)			60. (현행과 같음)		
66. (생략)			61. (현행과 같음)		
67. (생략)			62. (현행과 같음)		
68. (생략)			63. (현행과 같음)		
69. (생략)			64. (현행과 같음)		
70. (생략)			65. (현행과 같음)		
71. (생략)			66. (현행과 같음)		
72. (생략)			67. (현행과 같음)		
73. (생략)			68. (현행과 같음)		
74. (생략)			69. (현행과 같음)		
75. (생략)			70. (현행과 같음)		
76. (생략)			71. (현행과 같음)		
77. (생략)			72. (현행과 같음)		
78. (생략)			73. (현행과 같음)		
79. (생략)			74. (현행과 같음)		
80. (생략)			75. (현행과 같음)		
81. (생략)			76. (현행과 같음)		
82. (생략)			77. (현행과 같음)		
83. (생략)			78. (현행과 같음)		
84. (생략)			79. (현행과 같음)		
85. (생략)			80. (현행과 같음)		
86. (생략)			81. (현행과 같음)		
87. (생략)			82. (현행과 같음)		
88. (생략)			83. (현행과 같음)		
89. (생략)			84. (현행과 같음)		
90. (생략)			85. (현행과 같음)		
91. (생략)			86. (현행과 같음)		
92. (생략)			87. (현행과 같음)		
93. (생략)			88. (현행과 같음)		
94. (생략)			89. (현행과 같음)		
95. (생략)			90. (현행과 같음)		
96. (생략)			91. (현행과 같음)		
97. (생략)			92. (현행과 같음)		
98. (생략)			93. (현행과 같음)		
99. (생략)			94. (현행과 같음)		
100. (생략)			95. (현행과 같음)		
101. (생략)			96. (현행과 같음)		
102. (생략)			97. (현행과 같음)		
103. (생략)			98. (현행과 같음)		
104. (생략)			99. (현행과 같음)		
105. (생략)			100. (현행과 같음)		
106. (생략)			101. (현행과 같음)		
107. (생략)			102. (현행과 같음)		
108. (생략)			103. (현행과 같음)		
109. (생략)			104. (현행과 같음)		
110. (생략)			105. (현행과 같음)		
111. (생략)			106. (현행과 같음)		
112. (생략)			107. (현행과 같음)		
113. (생략)			108. (현행과 같음)		
114. (생략)			109. (현행과 같음)		
115. (생략)			110. (현행과 같음)		
116. (생략)			111. (현행과 같음)		
117. (생략)			112. (현행과 같음)		
118. (생략)			113. (현행과 같음)		
119. (생략)			114. (현행과 같음)		
120. (생략)			115. (현행과 같음)		
121. (생략)			116. (현행과 같음)		
122. (생략)			117. (현행과 같음)		
123. (생략)			118. (현행과 같음)		
124. (생략)			119. (현행과 같음)		
125. (생략)			120. (현행과 같음)		
126. (생략)			121. (현행과 같음)		
127. (생략)			122. (현행과 같음)		
128. (생략)			123. (현행과 같음)		
129. (생략)			124. (현행과 같음)		
130. (생략)			125. (현행과 같음)		
131. (생략)			126. (현행과 같음)		
132. (생략)			127. (현행과 같음)		
133. (생략)			128. (현행과 같음)		
134. (생략)			129. (현행과 같음)		
135. (생략)			130. (현행과 같음)		
136. (생략)			131. (현행과 같음)		
137. (생략)			132. (현행과 같음)		
138. (생략)			133. (현행과 같음)		
139. (생략)			134. (현행과 같음)		
140. (생략)			135. (현행과 같음)		
141. (생략)			136. (현행과 같음)		
142. (생략)			137. (현행과 같음)		
143. (생략)			138. (현행과 같음)		
144. (생략)			139. (현행과 같음)		
145. (생략)			140. (현행과 같음)		
146. (생략)			141. (현행과 같음)		
147. (생략)			142. (현행과 같음)		
148. (생략)			143. (현행과 같음)		
149. (생략)			144. (현행과 같음)		
150. (생략)			145. (현행과 같음)		
151. (생략)			146. (현행과 같음)		
152. (생략)			147. (현행과 같음)		
153. (생략)			148. (현행과 같음)		
154. (생략)			149. (현행과 같음)		
155. (생략)			150. (현행과 같음)		
156. (생략)			151. (현행과 같음)		
157. (생략)			152. (현행과 같음)		
158. (생략)			153. (현행과 같음)		
159. (생략)			154. (현행과 같음)		
160. (생략)			155. (현행과 같음)		
161. (생략)			156. (현행과 같음)		
162. (생략)			157. (현행과 같음)		
163. (생략)			158. (현행과 같음)		
164. (생략)			159. (현행과 같음)		
165. (생략)			160. (현행과 같음)		
166. (생략)			161. (현행과 같음)		
167. (생략)			162. (현행과 같음)		
168. (생략)			163. (현행과 같음)		
169. (생략)			164. (현행과 같음)		
170. (생략)			165. (현행과 같음)		
171. (생략)			166. (현행과 같음)		
172. (생략)			167. (현행과 같음)		
173. (생략)			168. (현행과 같음)		
174. (생략)			169. (현행과 같음)		
175. (생략)			170. (현행과 같음)		
176. (생략)			171. (현행과 같음)		
177. (생략)			172. (현행과 같음)		
178. (생략)			173. (현행과 같음)		
179. (생략)			174. (현행과 같음)		
180. (생략)			175. (현행과 같음)		
181. (생략)			176. (현행과 같음)		
182. (생략)			177. (현행과 같음)		
183. (생략)			178. (현행과 같음)		
184. (생략)			179. (현행과 같음)		
185. (생략)			180. (현행과 같음)		
186. (생략)			181. (현행과 같음)		
187. (생략)			182. (현행과 같음)		
188. (생략)			183. (현행과 같음)		
189. (생략)			184. (현행과 같음)		
190. (생략)			185. (현행과 같음)		
191. (생략)			186. (현행과 같음)		
192. (생략)			187. (현행과 같음)		
193. (생략)			188. (현행과 같음)		
194. (생략)			189. (현행과 같음)		
195. (생략)			190. (현행과 같음)		
196. (생략)			191. (현행과 같음)		
197. (생략)			192. (현행과 같음)		
198. (생략)			193. (현행과 같음)		
199. (생략)			194. (현행과 같음)		
200. (생략)			195. (현행과 같음)		
201. (생략)			196. (현행과 같음)		
202. (생략)			197. (현행과 같음)		
203. (생략)			198. (현행과 같음)		
204. (생략)			199. (현행과 같음)		
205. (생략)			200. (현행과 같음)		
206. (생략)			201. (현행과 같음)		
207. (생략)			202. (현행과 같음)		
208. (생략)			203. (현행과 같음)		
209. (생략)			204. (현행과 같음)		
210. (생략)			205. (현행과 같음)		
211. (생략)			206. (현행과 같음)		
212. (생략)			207. (현행과 같음)		
213. (생략)			208. (현행과 같음)		
214. (생략)			209. (현행과 같음)		
215. (생략)			210. (현행과 같음)		
216. (생략)			211. (현행과 같음)		
217. (생략)			212. (현행과 같음)		
218. (생략)			213. (현행과 같음)		
219. (생략)			214. (현행과 같음)		
220. (생략)			215. (현행과 같음)		
221. (생략)			216. (현행과 같음)		
222. (생략)			217. (현행과 같음)		
223. (생략)			218. (현행과 같음)		
224. (생략)			219. (현행과 같음)		
225. (생략)			220. (현행과 같음)		
226. (생략)			221. (현행과 같음)		
227. (생략)			222. (현행과 같음)		
228. (생략)			223. (현행과 같음)		
229. (생략)			224. (현행과 같음)		
230. (생략)			225. (현행과 같음)		
231. (생략)			226. (현행과 같음)		
232. (생략)			227. (현행과 같음)		
233. (생략)			228. (현행과 같음)		
234. (생략)			229. (현행과 같음)		
235. (생략)			230. (현행과 같음)		
236. (생략)			231. (현행과 같음)		
237. (생략)			232. (현행과 같음)		
238. (생략)			233. (현행과 같음)		
239. (생략)			234. (현행과 같음)		
240. (생략)			235. (현행과 같음)		
241. (생략)			236. (현행과 같음)		
242. (생략)			237. (현행과 같음)		
243. (생략)			238. (현행과 같음)		
244. (생략)			239. (현행과 같음)		
245. (생략)			240. (현행과 같음)		
246. (생략)			241. (현행과 같음)		
247. (생략)			242. (현행과 같음)		
248. (생략)			243. (현행과 같음)		
249. (생략)			244. (현행과 같음)		
250. (생략)			245. (현행과 같음)		
251. (생략)			246. (현행과 같음)		
252. (생략)			247. (현행과 같음)		
253. (생략)			248. (현행과 같음)		
254. (생략)			249. (현행과 같음)		
255. (생략)			250. (현행과 같음)		
256. (생략)			251. (현행과 같음)		
257. (생략)			252. (현행과 같음)		
258. (생략)			253. (현행과 같음)		
259. (생략)			254. (현행과 같음)		
260. (생략)			255. (현행과 같음)		
261. (생략)			256. (현행과 같음)		
262. (생략)			257. (현행과 같음)		
263. (생략)			258. (현행과 같음)		
264. (생략)					

현행			개정안		
2. (생략)	1. 2. (생략) 3. (생략) 4. (생략)	• (생략) • (생략)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u>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u>
3. (생략)	1. <u>무연고시체</u> 등의 처리	(생략)	3. (현행과 같음)	1. <u>무연고 시신</u> -----	(현행과 같음)
4~7. (생략)			4~7. (현행과 같음)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2. (생략) 3. <u>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u> 4. (생략) 5. (생략)	• (생략) • 「 <u>입양특례법</u> 」 제35조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u> • (생략) • (생략) • 「 <u>아동수당법</u>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등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가정위탁아동 지원</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u>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u> 」 제32조 • <u>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u>아동수당법</u> 」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현행			개정안		
2. (생략)	1. (생략)	• (생략) •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4. (생략)	2. (생략)		3.·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생략)	1. (생략)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략)	• 같은 법 제15조, <u>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u>		2. (현행과 같음)	• ----- <u>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4조, 제25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u>
5. (생략)			5. (생략)		

현행			개정안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u>한한다</u>)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 (----- <u>한정한다</u>)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폐기물관련 각종수수료</u> <u>부과·징수</u>	· <u>같은 조례 제18조, 제19조</u>	<u><삭제></u>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6. (생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생략)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6. (현행 제7호와 같음)		· <u>같은 법 제15조의2</u>
	8.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u>한한다</u>)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7. ----- (----- ----- <u>한정한다</u>)		· <u>같은 법 제14조</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1. (생략)	· <u>같은 조례 제19조</u>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현행			개정안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5. (생략)		4. 제1호 및 제2호----- ----- ----- -----	1.~5.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1. (생략)	· (생략)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부터 제3조의3까지	6.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제3 조, 제3조의2, 제3조의3
7.~11. (생략)	2. (생략)		7.~1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2. (생략)	1.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 (생략) ·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위생용품 관리법」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3. (생략)	1.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5조	1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위생용품 관리법」 —
	2.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 · (생략)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 · (생략) · (생략)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18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5.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19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6.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 · (생략)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7.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 · (생략)		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8.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		8.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9.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34조		9.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14. (생략)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등 관리	· 「위생용품관리법」 제27조	14. (현행과 같음)	1. ————— -위촉·해촉-----	· 「위생용품 관리법」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개식용 식품 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신고 2. 실태조사 3. 이행조치명령 4. 과태료 5. 벌칙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별법」 제10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7조

현행			개정안		
[관광과]			[관광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6. (생략)	(생략)	1. 테마파크업	1. 테마파크업 ----- 2. 테마파크업 ----- ----- 3. ---- 테마파크업 ----- ----- 4. ---- 테마파크업 ----- -----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임시시설허가 등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삭제>		
5. (생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주태과]			[주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7. (생략)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생략)	1.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 (-----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건축정책과]			[건축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생략)	1. ----- -----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	1. ----- ----- (-----2천-----) -----	(현행과 같음)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단,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생략)	2. ----- -----3 미만----- ----- (다만-----2천-----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3.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생략)	3. -----신고사항 변경----- ----- (-----2천제곱미터-----)	(현행과 같음)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단,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정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생략)	2. ----- ----- ----- (-----2천-----) -----	1. ----- ----- (다만----- ----- ----- -----)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생략)	2.~4. (생략)		3.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4. (생략)	1. (생략)	· 「건축법」 제13조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제11조
5. (생략)	1. (생략)	· (생략)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2. (현행과 같음)	· ----- 제15조의2, 제15조의3
	3. (생략)			3.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4. (생략)		7. ----- ----- ----- (----- -----2천 ----- -----) 8.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8. (생략)	5. (생략)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5. (현행과 같음)	· ----- ----제29조의2
9. 공사중단 장 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 에 한한다)	6.~7. (생략)		9. ----- ----- ----- ----- (----- ----- ----- ----한정한다)	6.~7.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자치단체, <u>한국토지공사</u> ,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u>같은 법</u> 제14조 · (생략) · <u>같은 법</u> 제28조 ·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u>한국토지주택공사</u> ----- ----- 1.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생략)					
4. 5. (생략)					
[주차교통과]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생략) · <u>같은 법</u> 147조	1. <u>주차·정차</u> ----- -----	1. <u>주차·정차</u> ----- ----- 2. (현행과 같음) 3. ----- <u>주차·정차</u> ----- -----	(현행과 같음) · -----제147조
2. (생략)	2. (생략)				
3. 부설주차장에	1. 2. (생략)				

현행			개정안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 축과에서 허가 하는 건축물) 4. (생략)	1~4. (생략)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치 <u>지도단속</u> 및 행 정처분 등	(생략)	----- (----- -----<u>건축물</u> <u>에 한정한다</u>) 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u>지도·단속</u>----- -----	(현행과 같음)
[도로정책과]			[도로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도로 등의 연 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u>도로점용 허가</u>	(생략)	1. ----- ----- <u>및 도로</u> -----	1, <u>도로점용허가</u>	(현행과 같음)
2. (생략)	2~4. (생략)		2.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3. 도로의 점용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하 였을 때에 다음 의 조치를 취하 는 권한	1. (생략) 2. (생략)	· <u>같은 법</u> 제73조 (생략)	3.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u>도로법</u> 」 ----- (현행과 같음)
4. 도로의 점용허	1. <u>도로점용 허가</u> 의 취소	· <u>같은 법</u> 제63조	2. ----- ----- <u>했을 때에</u> ----- ----- <u>하는</u> ----- -----	1. <u>도로점용허가</u> 의 취소	· 「 <u>도로법</u> 」 -----
	2. <u>법령위반자</u> 등에 대한 처 분	(생략)	4. -----	2. <u>법령 위반자</u> 등에 대한 처 분	(현행과 같음)
	1. (생략)	· <u>같은 법</u> 제97조		1. (현행과 같음)	· 「 <u>도로법</u> 」 -----

현행			개정안		
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 요한 조치를 취 하는 권한			----- ----- ----- -----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1. (생 략)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	6.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 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한다)	(생 략)	8. (현행과 같음)	1. ----- ----- (----- -----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2. · 3. (생 략)		9.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 같은 법 제14조		2. (현행과 같음)	· ----- 제1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0. · 11.(생 략)			10. · 11.(현행과 같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u>2,000</u> 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u>2,000</u> 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6.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 ----- <u>2천</u> -----) 2. ----- ----- -----(<u>2천</u> -----)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2. (생략) 3. (생략) 4.~6. (생략)	· <u>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u> · (생략)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39조, 제42조, 제42조의2</u> · (현행과 같음)
2. (생략)	1. (생략) 2.~5. (생략) <u><신설></u>	· <u>같은 법 제10조</u>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6. <u>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사후관리</u>	· 「 <u>농지법</u> 」 ----- · <u>같은 법 제41조의3, 제42조</u>
3. (생략)	1. (생략)	· <u>같은 법 제49조</u>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농지법</u> 」 -----

현행			개정안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 「동물보호법」 제33조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제69조, 제73조
	2. (생략)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2. (현행과 같음)	· ----- 제75조부터 제77조
	3. (생략)	· 같은 법 제13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 ----- 제16조
	4. (생략)	·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4. (현행과 같음)	· ----- 제101조제4항
2. (생략)			2. (생략)		
[녹지과]			[녹지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1.~3. (생략)		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생략)	· (생략)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 ----- 제24조까지
	5.~9. (생략)			5.~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 「산림보호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15조 · (생략)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67조 · 「산림보호법」 ---- · (현행과 같음)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 같은 법 제79조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2. (생략)	1. (생략) 2. 공작물의 <u>신·개축</u> 변경, 제거 허가 3.~12. (생략) 1.. (생략)	(생략) · 같은 법 제13조제1항	1. 공유수면--- ----- -----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신축·개축</u> --- ----- 3.~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공유수면 관리 및 <u>매립에 관한 법률</u> 」 -----

현행			개정안		
3. (생략)	2.~5. (생략) 6. (생략) 7.·8. (생략) 1. (생략)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9조	3.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제16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5. (생략) 6. (생략)	2. (생략) 1. (생략)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20조까지	4.~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현행	개정안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복지정책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 (생략)</td><td>·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td></tr><tr><td>2. (생략)</td><td></td><td></td></tr></table> [노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td><td></td></tr><tr><td>2. (생략)</td><td>1. · 2. (생략)</td><td></td></tr><tr><td></td><td>3. (생략)</td><td>·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td></tr><tr><td></td><td>4. (생략)</td><td></td></tr></table> [장애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4. (생략)</td><td></td></tr><tr><td></td><td>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td><td>(생략)</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2. (생략)	1. · 2. (생략)			3. (생략)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4. (생략)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생략)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복지정책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같음)</td><td>1. (현행과 같음)</td><td>·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td></tr><tr><td>2. (현행과같음)</td><td></td><td></td></tr></table> [노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td><td></td></tr><tr><td>2. (현행과 같음)</td><td>1. · 2. (현행과 같음)</td><td></td></tr><tr><td></td><td>3. (현행과 같음)</td><td>·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td></tr><tr><td></td><td>4. (현행과 같음)</td><td></td></tr></table> [장애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같음)</td><td>1.~4. (현행과 같음)</td><td></td></tr><tr><td></td><td>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현행과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4.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2. (생략)	1. · 2. (생략)																																																																		
	3. (생략)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4. (생략)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현행과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4.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별표 3]</u> <u>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u> <u>[시민봉사과]</u> <table><tr><th><u>위임사무명</u></th><th><u>단위사무명</u></th><th><u>근거법규</u></th></tr><tr><td><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td><td><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u> <u>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u> <u>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u></td><td><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3</u> <u>· 같은 법 제6조의3</u></td></tr></table>	<u>위임사무명</u>	<u>단위사무명</u>	<u>근거법규</u>	<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u> <u>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u> <u>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3</u> <u>· 같은 법 제6조의3</u>
<u>위임사무명</u>	<u>단위사무명</u>	<u>근거법규</u>					
<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u> <u>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u> <u>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2</u> <u>· 같은 법 제6조의3</u> <u>· 같은 법 제6조의3</u>					

별첨 1**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3. 삭제 <2021. 11. 30.>
4. 삭제 <2021. 11. 30.>
5. 삭제 <2021. 11. 30.>
6. 삭제 <2021. 11. 30.>
7. 삭제 <2021. 11. 30.>
8. 삭제 <2021. 11. 30.>
9. 삭제 <2021. 11. 30.>
10. 삭제 <2021. 11. 30.>

② 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등 사건의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연구사 및 지도사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1. 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

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③ 방법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삭제<2011. 4. 7.>

⑥ 삭제<2011. 4. 7.>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2012. 8. 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15. 1. 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보관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사도법」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

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营业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영업승계)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74조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6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진화·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조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사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고양시 고시 제2025 - 3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242호(2022. 7. 12.), 제2022-268호(2022. 8. 9.), 제2023-463호(2023. 12. 19.) 및 제2024-510호(2024. 12. 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지방도357호선(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9.

고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 연장 (km)	비고
	지방도	357	제2자유로	1,662,110	덕은동 고양시계	구산동 고양시계	가좌동 대화동 장항동 강매동 덕은동	22.69	도로구역 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 없이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기간 연장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지정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시행자 : 고양시장

4. 토지세목조서

- 변경없음.

고양시 고시 제2025 - 37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71-63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1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2-11, 542-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71-63 (설문동)	2025-12-09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2-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71-61 (설문동)	2025-12-09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855 (설문동)	2025-12-09	20090824	고봉산 아래를 지나는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9-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99-2 (화전동)	2025-12-09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지나는 가장 큰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192번길 23-13 (구산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192번길 23-11 (구산동)	2025-12-09	20100126	송산로 시점에서 192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77-1	2025-12-05	건물 신축	2023-06-16	식사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77-2	2025-12-05	건물 신축	2023-06-16	식사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277-3	2025-12-05	건물 신축	2023-06-16	식사동	

고양시 공고 제2025-277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5-190(2025. 6. 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사업
 - 명 칭 :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충인시설 등) 설치사업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0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마.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4	하수종말 처리장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920,636	관보 제1984-9929호 (1984.12.28.)	-
금회시행	4	하수종말 처리장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920,636	-	반류수조 덮개설치 반류수반응조 탈취기설치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920,636	920,636	
하수처리 시설	건축면적	23,447	23,447	변경없음
	건축외면적	360,478	360,478	변경없음
	소 계	383,925	383,925	변경없음
체육시설	축구장 등	17,532	17,532	변경없음
도로	관리용도로	48,015	48,015	변경없음
	내부도로	13,303.43	13,303.43	변경없음
	소 계	61,318.43	61,318.43	변경없음
녹지 및 여유부지	조경녹지	202,228	202,228	변경없음
	여유부지	255,633	255,633	변경없음
	소 계	457,861	457,861	변경없음

- 건축계획 [변경없음]

세부내역			건축물대장 등재(㎡)				비 고
			기 정		변 경		
번 호	건물명칭	층 수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합 계			39,480.49	23,447.15			
1	가스발전기실	1/1	2,184.00	1,260.00			
2	감시동	0/1	36.00	36.00			
3	관리본관	1/2	4,562.50	1,908.30			
4	농축기계동	0/1	112.20	112.20			
5	드럼스크린실	0/1	124.62	124.62			
6	보일러동	1/1	1,166.80	592.80			
7	사여과지상옥	0/1	122.10	122.10			
8	소포수펌프동(1)	0/1	19.76	19.76			
9	소포수펌프동(2)	0/1	19.76	19.76			
10	소포수펌프동(3)	0/1	19.76	19.76			
11	송풍기동	0/1	144.00	144.00			
12	송풍기동(1)	1/2	2,325.75	1,095.60			
13	송풍기동(2)	1/1	1,429.60	736.00			
14	슬러지처리동	1/3	1,981.94	1,324.05			
15	중침계단실A	0/1	24.00	29.25			
16	중침계단실B	0/1	24.00	29.25			
17	중침계단실C	0/1	24.00	29.25			
18	중침계단실D	0/1	24.00	29.25			
19	중침전기실A	0/1	89.11	89.11			
20	중침전기실B(1)	0/1	70.70	73.18			
21	중침전기실B(2)	0/1	70.70	73.18			
22	초침계단실A(1)	0/1	21.75	27.00			
23	초침계단실A(2)	0/1	21.75	27.00			
24	초침계단실B(1)	0/1	21.75	27.00			
25	초침계단실B(2)	0/1	21.75	27.00			
26	초침계단실C	0/1	21.75	27.00			
27	초침계단실D(1)	0/1	20.85	26.10			
28	초침계단실D(2)	0/1	20.85	26.10			

29	초침계단실D(3)	0/1	20.85	26.10			
30	초침계단실E(1)	0/1	18.80	22.80			
31	초침계단실E(2)	0/1	18.80	22.80			
32	초침계단실E(3)	0/1	18.80	22.80			
33	초침전기실A	0/1	113.30	113.30			
34	초침전기실B(1)	0/1	45.90	45.90			
35	초침전기실B(2)	0/1	45.90	45.90			
36	탈수기동	1/2	1,880.00	702.00			
37	탈지헨동	0/2	400.00	212.36			
38	토양탈취헨실(1)	0/1	72.00	72.00			
39	토양탈취헨실(2)	0/1	72.00	72.00			
40	투입동	0/2	2,240.96	1,779.38			
41	포기조계단실(1)	0/1	16.14	16.14			
42	포기조계단실(2)	0/1	16.14	16.14			
43	포기조계단실(3)	0/1	16.14	16.14			
44	오물탈수기동	1/3	4,842.50	1,844.90			
45	급수동	1/2	1,487.90	509.60			
46	수전실	0/2	660.50	653.70			
47	수위실	0/1	63.00	63.00			
48	농축조기계실	0/1	112.20	112.20			
49	오수펌프장	1/1	126.10	21.40			
50	초침수전실(1)	0/1	54.00	54.00			
51	초침수전실(2)	0/1	54.00	54.00			
52	초침수전실(3)	0/1	54.00	54.00			
53	기계반입실 및계단실(1)	0/1	20.70	20.70			
54	기계반입실 및계단실(2)	0/1	20.70	20.70			
55	기계반입실 및계단실(3)	0/1	20.70	20.70			
56	초침계단실F(1)	0/1	16.90	16.90			
57	초침계단실F(2)	0/1	16.90	16.90			
58	초침계단실F(3)	0/1	16.90	16.90			
59	초침계단실F(4)	0/1	16.90	16.90			
60	초침계단실F(5)	0/1	16.90	16.90			

61	초침계단실F(6)	0/1	16.90	16.90			
62	(음식물처리장)	0/2	1,624.23	1,543.20			
63	2계열전기실	0/1	59.74	59.74			
64	방류펌프장	0/1	987.00	987.00			
65	슬러지보관창고	0/1	900.00	900.00			
66	2농축기동	1/2	1,158.00	739.16			
67	중침계단실E(1)	0/1	15.52	15.52			
68	중침계단실E(2)	0/1	15.52	15.52			
69	중침계단실E(3)	0/1	15.52	15.52			
70	포기조중침계단실F(1)	0/1	17.10	17.10			
71	포기조중침계단실F(2)	0/1	17.10	17.10			
72	포기조중침계단실F(3)	0/1	17.10	17.10			
73	포기조중침계단실F(4)	0/1	17.10	17.10			
74	포기조중침계단실F(5)	0/1	17.10	17.10			
75	포기조중침계단실F(6)	0/1	17.10	17.10			
76	포기조중침계단실F(7)	0/1	17.10	17.10			
77	포기조중침계단실F(8)	0/1	17.10	17.10			
78	포기조중침계단실F(9)	0/1	17.10	17.10			
79	1계열전기실	0/1	72.42	75.89			
80	3계열전기실	0/1	72.42	75.89			
81	녹조류펌프실	0/1	97.50	101.40			
82	차량대기실동	0/1	1,132.70	1,132.70			
83	1농축기동	1/1	602.56	384.06			
84	용수공급동	0/1	90.20	90.20			
85	오수펌프동	0/1	92.59	92.59			
86	농축기동(1처리장)	0/2	1,101.73	580.43			
87	농축기동(2처리장)	1/3	1,228.88	584.00			
88	탈황설비(1처리장)	0/2	236.54	131.89			
89	탈황설비(2처리장)	0/2	198.58	110.85			
90	TMS실	0/1	80.52	80.52			
91	총인처리동	2/2	2,205.24	806.4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920,636	920,636						
1	강매동	300-7	잡	30,959	30,959	서울시	공				
2	덕은동	523-16	잡	8,145	8,145	서울시	공				
3	덕은동	523-17	잡	73	73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4	덕은동	523-19	잡	97	97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5	덕은동	523-20	잡	1,044	1,044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6	덕은동	523-21	잡	26	26	서울시	공				
7	덕은동	523-23	잡	5,669	5,669	서울시	공				
8	덕은동	523-24	잡	231	231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403	임○남				
9	덕은동	523-27	잡	11	11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10	덕은동	523-34	잡	356	356	서울시	공				
11	덕은동	523-35	잡	537	537	서울시	공				
12	덕은동	523-36	잡	290	290	서울시	공				
13	덕은동	523-37	잡	7	7	서울시	공				
14	덕은동	523-38	잡	13	13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15	덕은동	523-39	잡	19	19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16	덕은동	523-43	잡	3,097	3,097	서울시	공				
17	덕은동	523-44	잡	3,828	3,828	서울시	공				
18	덕은동	523-45	잡	9	9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19	덕은동	523-46	잡	363	363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20	덕은동	523-47	잡	1,175	1,175	개성시 동흥동 471	박○오				
21	덕은동	523-48	잡	143	143	서울시	공				
22	덕은동	523-49	잡	36	36	서울시	공				
23	덕은동	525-0	잡	63,632	63,632	서울시	공				
24	덕은동	525-1	잡	706	706	서울시	공				
25	덕은동	525-2	잡	9,523	9,523	서울시	공				
26	덕은동	525-3	잡	23,856	23,856	서울시	공				
27	덕은동	531-4	잡	57	57	서울시	공				

28	덕은동	537-19	잡	215	215	서울시	공				
29	덕은동	546-1	잡	28	28	서울시	공				
30	덕은동	555-2	잡	2,742	2,742	서울시	공				
31	덕은동	555-5	잡	72	72	서울시	공				
32	덕은동	555-6	잡	280	280	서울시	공				
33	덕은동	557-13	잡	240	240	서울시	공				
34	덕은동	557-59	잡	106	106	서울시	공				
35	덕은동	557-85	잡	2,535	2,535	서울시	공				
36	덕은동	557-92	잡	340	340	서울시	공				
37	덕은동	557-93	잡	41	41	서울시	공				
38	덕은동	575-14	잡	16	16	서울시	공				
39	덕은동	575-15	잡	40	40	서울시	공				
40	현천동	593-7	잡	17	17	서울시	공				
41	현천동	593-8	잡	17	17	서울시	공				
42	현천동	593-9	잡	19	19	국토교통부	국				
43	현천동	593-10	잡	173	173	국토교통부	국				
44	현천동	593-11	잡	2	2	국토교통부	국				
45	현천동	614-4	잡	1,170	1,170	서울시	공				
46	현천동	634-5	잡	1780	1780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280	280	고양군 신도읍 화전리 563	권○석				
47	현천동	653-2	잡	225	225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08-46	노○석				
48	현천동	673-2	잡	364,087	364,087	서울시	공				
49	현천동	673-3	잡	187,034	187,034	서울시	공				
50	현천동	673-4	잡	19	19	서울시	공				
51	현천동	673-5	잡	692	692	서울시	공				
52	현천동	673-6	잡	110	110	서울시	공				
53	현천동	673-7	잡	4	4	서울시	공				
54	현천동	673-8	잡	1,176	1,176	서울시	공				
55	현천동	673-9	잡	849	849	서울시	공				
56	현천동	673-10	잡	7,810	7,810	서울시	공				
57	현천동	673-11	잡	372	372	서울시	공				
58	현천동	673-12	잡	161	161	서울시	공				

59	현천동	673-13	잡	434	434	서울시	공				
60	현천동	673-14	잡	1,168	1,168	서울시	공				
61	현천동	673-15	잡	8	8	서울시	공				
62	현천동	673-16	잡	1,316	1,316	서울시	공				
63	현천동	673-17	잡	20	20	서울시	공				
64	현천동	673-18	잡	15	15	서울시	공				
65	현천동	673-19	잡	40	40	서울시	공				
66	현천동	673-20	잡	69	69	서울시	공				
67	현천동	673-21	잡	143	143	서울시	공				
68	현천동	673-22	잡	351	351	서울시	공				
69	현천동	673-23	잡	126	126	서울시	공				
70	현천동	689-15	잡	185	185	서울시	공				
71	현천동	692-2	잡	12,907	12,907	서울시	공				
72	현천동	692-12	잡	267	267	서울시	공				
73	현천동	692-13	잡	454	454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58	58	대전시 중구 갈마동30브릭 2호	이○호				
74	현천동	692-15	잡	62	62	경기도	공				
75	현천동	692-24	잡	89	89	서울시	공				
76	현천동	692-25	잡	34,119	34,119	서울시	공				
77	현천동	692-26	잡	289	289	서울시	공				
78	현천동	692-31	잡	124	124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16	16	국토교통부	국				
79	현천동	692-36	잡	101	101	서울시	공				
80	현천동	692-37	잡	789	789	국토교통부	국				
81	현천동	692-38	잡	210	210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27	27	국토교통부	국				
82	현천동	694-2	잡	1,168	1,168	서울시	공				
83	현천동	697-4	잡	60	60	경기도	공				
84	현천동	708-3	잡	878	878	서울시	공				
85	현천동	708-5	잡	16,809	16,809	서울시	공				
86	현천동	709-0	잡	1,993	1,993	서울시	공				
87	현천동	716-0	잡	1,802	1,802	서울시	공				

88	현천동	729-7	전	39	39	국가정보원	국				
89	현천동	729-9	잡	1,593	1,593	서울시	공				
90	현천동	763-7	잡	8,049	8,049	서울시	공				
91	현천동	763-8	잡	27,643	27,643	서울시	공				
92	현천동	764-0	잡	2,473	2,473	서울시	공				
93	현천동	765-0	잡	2,689	2,689	서울시	공				
94	현천동	766-0	잡	220	220	서울시	공				
95	현천동	771-7	잡	7,560	7,560	서울시	공				
96	현천동	771-8	잡	67,719	67,719	서울시	공				

고양시 공고 제2025-2780호

도시계획시설[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475(2024. 11. 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19-2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19-28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93-1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덕양구 신원동 119-28	덕양구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
금회시행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덕양구 신원동 119-28	덕양구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
결정	대로	2	11	30~46	주간선 도로	11,160	덕양구 성사동 523-5	덕양구 벽제동 산38-1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
금회시행	대로	2	11	3~4	주간선 도로	105	덕양구 신원동 276-1	덕양구 신원동 293-3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목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다, 바” 항목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 토지조서(소로2-29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68필지		9,397	9,111					
1	기정	신원동	119-28	도	311	311	고양시			
2	기정	신원동	255-19	답	73	73	고양시			
3	기정	신원동	255-6	도	16	16	고양시			
4	기정	신원동	255-21	답	15	15	고양시			
5	기정	신원동	255-16	답	138	138	고양시			
6	기정	신원동	255-20	도	6	6	고양시			
7	기정	신원동	255-17	도	56	56	고양시			
8	기정	신원동	255-18	도	10	10	고양시			
9	기정	신원동	256-9	도	56	56	고양시			
10	기정	신원동	256-7	대	1	1	고양시			
11	기정	신원동	257-5	도	373	373	국(국토교통부)			
12	기정	신원동	257-6	도	15	15	고양시			
13	기정	신원동	258-4	답	32	32	고양시			
14	기정	신원동	258-6	답	4	4	고양시			
15	기정	신원동	258-7	답	6	6	고양시			
16	기정	신원동	258-8	답	167	167	고양시			
17	기정	신원동	259-3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18	기정	신원동	259-2	도	96	96	고양시			
19	기정	신원동	260-34	답	312	312	고양시			
20	기정	신원동	260-42	답	49	49	고양시			
21	기정	신원동	260-35	대	44	44	고양시			
23	기정	신원동	260-45	대	100	100	고양시			
24	기정	신원동	260-9	도	127	127	고양시			
25	기정	신원동	260-37	도	92	92	고양시			
26	기정	신원동	260-46	대	7	7	고양시			
27	기정	신원동	260-33	도	51	51	고양시			
28	기정	신원동	260-13	대	289	3	은유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32 (원흥동)		
29	기정	신원동	260-40	도	26	26	고양시			
30	기정	신원동	260-21	도	15	15	고양시			
31	기정	신원동	260-41	도	4	4	고양시			
32	기정	신원동	260-24	도	4	4	고양시			
33	기정	신원동	261-8	전	18	18	고양시			
34	기정	신원동	261-9	전	13	13	고양시			
35	기정	신원동	262-1	대	87	87	고양시			
36	기정	신원동	266-24	답	24	24	고양시			
37	기정	신원동	266-25	답	16	16	고양시			
38	기정	신원동	266-30	답	471	471	고양시			
39	기정	신원동	266-28	답	20	20	고양시			
40	기정	신원동	267-2	도	132	132	고양시			
41	기정	신원동	267-7	도	280	28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2	기정	신원동	267-9	도	102	102	고양시			
43	기정	신원동	272-8	답	3	3	고양시			
44	기정	신원동	275-10	답	181	181	고양시			
45	기정	신원동	275-11	답	112	112	고양시			
46	기정	신원동	293-4	전	32	32	고양시			
47	기정	신원동	293-5	전	173	173	고양시			
48	기정	신원동	293-10	전	148	148	고양시			
49	기정	신원동	294-17	답	4	4	고양시			
50	기정	신원동	294-18	답	89	89	고양시			
51	기정	신원동	294-20	답	89	89	고양시			
52	기정	신원동	294-21	답	11	11	고양시			
53	기정	신원동	294-7	답	76	76	고양시			
54	기정	신원동	294-11	답	85	85	고양시			
55	기정	신원동	470-16	구	47	47	국(건설부)			
56	기정	신원동	470-21	구	255	255	국(건설부)			
57	기정	신원동	470-19	구	29	29	국(건설부)			
58	기정	신원동	473-17	도	320	320	고양시			
59	기정	신원동	473-13	도	45	45	고양시			
60	기정	신원동	473-18	도	543	543	고양시			
61	기정	신원동	473-15	도	25	25	고양시			
62	기정	신원동	475-11	도	63	63	고양시			
63	기정	신원동	475-6	도	700	700	고양시			
64	기정	신원동	475-17	도	1,976	1,976	고양시			
65	기정	신원동	475-3	도	76	76	고양시			
66	기정	신원동	475-4	도	8	8	고양시			
67	기정	신원동	489-7	도	300	300	고양시			
68	기정	신원동	489-6	천	28	28	고양시			
69	기정	신원동	산26-3	임	162	162	고양시			

-토지 조서(대로2-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453	453					
1	신원동	275-12	답	186	186	고양시				
2	신원동	275-14	답	131	131	고양시				
3	신원동	276-2	답	4	4	고양시				
4	신원동	292-1	답	17	17	고양시				
5	신원동	293-11	전	81	81	고양시				
6	신원동	473-21	도	34	34	고양시				

고양시 공고 제2025-27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1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고시 제2025-96(2025. 4. 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덕양구 오금동 228-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0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28-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오금동 큰골취락(소로3-201호선 외 1)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540m	오금동 209-1	오금동 233	일반 도로	경기도 제2006-5096호 (2006.07.03)	
금회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126m	오금동 458-5	오금동 229-2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235m	오금동 225-4	오금동 226-1	일반 도로	경기도 제2006-5096호 (2006.07.03)	
금회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180m	오금동 225-15	오금동 211-13	일반 도로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목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목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 소로3-20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 류
1	오금동	458-5	구	1,043.0	8.0	건설부	국			
2	오금동	246-5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3	오금동	228-10	대	66.0	1.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6-1	김*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4	한국화훼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4	오금동	228-4	대	264.0	3.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6-1	김*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4	한국화훼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5	오금동	246-12	도	22.0	20.0	일산구 풍동 **3-*4	김*월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6-4	임*자			
6	오금동	228-11	전	526.0	2.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6-7	강*자			
7	오금동	456	도	450.0	100.0	국토교통부	국			
8	오금동	246-1	도	129.0	107.0	국토교통부	국			
9	오금동	228-5	대	483.0	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동 **5호(여의도동, *정아파트)	김*정			
							정*규			
10	오금동	246-11	도	93.0	1.0	일산구 풍동 **3-*4	김*월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6-4	임*자			
11	오금동	228-7	도	79.0	78.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4-*0	원*연			
12	오금동	228-12	도	10.0	1.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4-*0	원*연			
13	오금동	228-6	전	20.0	2.0		기획재정부			
14	오금동	228-9	전	651.0	145.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9	임*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184 (삼송동)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5	오금동	228-8	도	195.0	177.0	건설교통부	국			
16	오금동	산141-1	임	19,339.0	4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9-1 *대아파트 *4-**5	구*자			
						일산구 마두동 **6 강촌마을 **1-***3	고*석			
						국가보훈처	국			
17	오금동	229-2	도	155.0	23.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	김*식			
18	오금동	225-5	도	43.0	4.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1	강*희			
19	오금동	229-6	전	3,301.0	15.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8-5	이*영			
20	오금동	225-15	전	1,153.0	8.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7-6	강*형			
합 계				28,037	781					

- 소로3-20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 류
1	오금동	225-15	전	1,153.0	76.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7-6	강*형			
2	오금동	산141-1	임	19,339.0	807.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9-1 *대아파트 *4-**5	구*자			
						일산구 마두동 **6 강촌마을 **1-***3	고*석			
						국가보훈처	국			
3	오금동	227	대	1,964.0	8.0	일산구 풍동 산*6-2	고*장			
4	오금동	225-17	도	3.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7-4	김*덕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36 (주교동(산원지점))	완강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7-4	김*덕			

5	오금동	225-3	대	496.0	19.0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번길 *8-*2, **1호	공*정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성사동)(원흥지점)	고양축산 산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번길 *8-*2, **1호	탁*경			
6	오금동	225-8	전	208.0	9.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1	강*희			
7	오금동	225-1	대	476.0	47.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1	강*희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25-1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	오금동	226-5	대	327.0	12.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5	석*영			
9	오금동	226-14	대	3.0	3.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7-*3	정*철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삼송 동)(대덕지점)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0	오금동	226-13	도	2.0	2.0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7-*3	정*철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삼송 동)(대덕지점)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1	오금동	226-3	대	286.0	3.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1	김*자			
12	오금동	211-13	도	484.0	99.0	고양시	공			
합 계				24,741	1,088					

고양시 공고 제2025-2782호

도시계획시설[소로3-507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127(2024. 3. 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0-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3-507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0-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소로3-507호선 외 1개소]사업
- 명칭: 원신2통 마을안길[소로3-507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결정	소로	3	507	6	293		
금회시행	소로	3	507	6	293	2,008	
결정	소로	3	508	6	228		
금회시행	소로	3	508	6	1.5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 토지조서

- 소로3-507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원당동	491-2	도	97	97	공	고양시				
2	원당동	491-5	임	6	6	공	고양시				
3	원당동	491-1	임	251	251	공	고양시				
4	원당동	491-3	임	43	43	공	고양시				
5	원당동	468-14	임	1	1	공	고양시				
6	원당동	468-13	임	8	8	국	국토교통부				
7	원당동	468-15	임	16	16	국	국토교통부				
8	원당동	491-6	임	2	2	공	고양시				
9	원당동	1057-8	구	15	15	공	고양시				
10	원당동	1057-9	구	8	8	공	고양시				
11	원당동	1057-4	구	6	6	공	고양시				
12	원당동	1057-6	구	37	37	공	고양시				
13	원당동	492-2	전	12	12	공	고양시				
14	원당동	492-1	전	11	11	공	고양시				
15	원당동	1056-18	도	7	7	공	고양시				
16	원당동	1056-13	도	31	31	공	고양시				
17	원당동	1056-17	도	2	2	공	고양시				
18	원당동	1056-14	도	67	67	공	고양시				
19	원당동	1056-15	도	42	42	공	고양시				
20	원당동	487-9	답	8	8	공	고양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21	원당동	487-4	답	20	20	공	고양시				
22	원당동	487-10	답	11	11	공	고양시				
23	원당동	487-8	답	3	3	공	고양시				
24	원당동	486-5	답	82	82	공	고양시				
25	원당동	486-9	답	6	6	공	고양시				
26	원당동	485-7	전	56	56	공	고양시				
27	원당동	485-8	전	2	2	공	고양시				
28	원당동	485-5	전	72	72	공	고양시				
29	원당동	482-3	답	267	267	공	고양시				
30	원당동	505-4	도	3	3	공	고양시				
31	원당동	505-3	도	2	2	공	고양시				
32	원당동	504-2	대	66	66	공	고양시				
33	원당동	483-1	대	29	29	공	고양시				
34	원당동	484-1	대	9	9	공	고양시				
35	원당동	502-5	도	6	6	공	고양시				
36	원당동	502-3	대	129	129	공	고양시				
37	원당동	506-7	임	3	3	공	고양시				
38	원당동	506-8	임	348	348	공	고양시				
39	원당동	507-3	전	131	1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로 1**, *0*동1*01호 (호계동, **아파트)	이*환				
40	원당동	508-3	전	1	1		고양시				
41	원당동	1053-4	구	49	49	공	고양시				
42	원당동	1053-5	구	32	32	국토교통부	국				
43	원당동	501-1	대	11	11	공	고양시				
소계				2,008	2,008						

- 소로3-508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원당동	492-3	전	9	9		서*보				
2	원당동	1056-22	도	14	14	공	고양시				
3	원당동	486-4	답	8	8	공	고양시				
4	원당동	485-9	전	5	5	공	고양시				
5	원당동	506-13	임	34	34	공	고양시				
소계				70	70						

○ 지장물 조서 (변경없음)

-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EA)	주소	성명	
1	삼송동	492	건물	비닐하우스	1		서*보	
2	"	493-1	건물	스레트	1	원당동 4*3-*	권*삼	
3	"	485-2	건물	비닐하우스	1	성남시 중원구 야탑동 3***	권*창	
4	"	482-1	건물	비닐하우스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로 1*2, *0*동 *0*호(야탑동,진***파크)	권*창	
5	"	483	건물	비닐하우스	1	원당동 5**	이*종	
6	"	504	건물	조립식	1	서울 강남구 신사동 2**-*	이*종	
7	"	504	건물	조립식	1	서울 강남구 신사동 2**-*	이*종	
8	"	502	대문	철재	1	원당동 5**	이*종	
9	"	502	담장	벽돌	26m	원당동 5**	이*종	
10	"	507-1	웬스		56m	일산구 일산동 1*** **마을 2**-*0*	이*환	
11	"	507-1	웬스 출입문		1	일산구 일산동 1*** **마을 2**-*0*	이*환	
12	"	507-1	건물	비닐하우스	1	일산구 일산동 1*** **마을 2**-*0*	이*환	
13	"	507-1	웬스 출입문		1	일산구 일산동 1*** **마을 2**-*0*	이*환	
합계					14			

- 통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원당동	STA 0+165	중		KT	
2	"	STA 0+262	중		"	
3	"	STA 0+283	우		"	

- 한전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원당동	STA 0+50	좌		한국전력공사	2-412
2	"	STA 0+117	좌		"	"
3	"	STA 0+166	중		"	"
4	"	STA 0+236	좌		"	"
5	"	STA 0+283	우		"	"

- CCTV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방향	수량	소관청	비고
					(EA)		
1	원당동	STA. 0+161	CCTV	중	1	고양시	

고양시 공고 제 2025 - 27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3-435호(2023. 11. 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덕양구 원흥동 3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 사업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토지조서(등록전환), 지장물조서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94번지
 - 종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78-3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3-553호선)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553	6	국지 도로	206	-	원흥동 594	원흥동 578-3	일반 도로	-	고고제106호 (09.05.04.)	-
금회시행	소로	3	553	6	국지 도로	206	1,189	원흥동 594	원흥동 578-3	일반 도로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 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4-8	대	16	16		고양시			
2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4-5	도	7	7		고양시			
3	기 정	덕양구 원흥동	594-2	도	259	259	국	기획재정 부			
	변 경	덕양구 원흥동	594-2	도	259	259		고양시			
4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5-34	대	14	14		고양시			
5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5-35	도	13	13		고양시			
6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5-26	도	8	8		고양시			
7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5-27	도	23	23		고양시			
8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5-24	임	33	33		고양시			
9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1-33	대	34	34		고양시			
10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1-31	도	32	32		고양시			
11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2-1	대	31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4, *04동 1307호 등	김○분외 1 인			
	변 경	덕양구 원흥동	342-1	대	31	31		고양시			
12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1-25	도	213	213		고양시			
13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39	전	1,544	37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9-50, *01동 *204호	청주한씨봉 공파종중			
14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41-9	임	6,446	8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9-50, *01동 *204호	청주한씨봉 공파종중			
15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37-7	대	8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50번길 *8-19, **동 *02호	김○례			
16	기 정	덕양구 원흥동	337-3	전	212	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3번길 *8	임○경			
합 계			기정	8,893	1,189						

2) 지장물조서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1	기정	원흥동	341-16	옹벽	H=1.5m	24.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3번길 *4	박O안 외 1인	
	변경	-	-	-	-	-	-	-	-	
2	기정	원흥동	345-24	석축	H=4.5m	15.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4번길 4*-72	박O양	2열
	변경	-	-	-	-	-	-	-	-	
3	기정	원흥동	342	옹벽	H=2.5~3.5m	24.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2	이O화	
	변경	-	-	-	-	-	-	-	-	
4	기정	원흥동	339	비닐하우스		4.0	m ²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9-50, *01동 *204호	청주한씨종중 외 2인	

고양시 공고 제2025 - 27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83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343호(2024. 9. 13.)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7-4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383호선 외 1개소] 사업에 대하여, 지장물조서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7-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용두동(소로3-383호선 외 1개소)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구 분	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소로 3-383호선	6	16	6.0	16	99	
소로 2-376호선	8	328	6.0	4	1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소로3-383호선) (변경없음)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3 필지				99	99					
1	용두동	295-13	도	9	9	고양시				
2	용두동	347-48	전	44	44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용두로 6*(용두동)			
3	용두동	347-50	전	46	46	박*택	서울시 은평구 서 오릉로2*길 3*-8, *01호(구 산 동 , ****든빌)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홍 제동지점)	근저당 권
							중소기 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 로2가)(불광역 지점)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용두로 1*-7, *02호(용두동)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용두로 6*, 2 층(용두동)	서울측 산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등 촌동)(북가좌지 점)	근저당 권

○ 토지조서 (소로2-376호선)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필지				18	18					
1	용두동	347-47	전	3	3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용두동)			
2	용두동	347-49	전	2	2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중소기업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홍제동 지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불광 역지점)	근저 당권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 *층 (용두동)	서울측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등촌동)(북가좌 지점)	근저 당권
3	용두동	900-7	도	13	13	국토교 통부				

○ 지장물 조서 (변경)

[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용두동	347-50	담장	H=1.0m, T=20cm	2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3-383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3-383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3-383호선
2				H=1.0m, T=20cm	2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2-376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2-376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2-376호선
3		웬스	H=12m	2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3-383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3-383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3-383호선	
4			H=1.2m	2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2-376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2-376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2-376호선	
5	용두동	900-7	담당	H=1m, T=20cm	8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2-376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2-376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2-376호선
		웬스	H=1.2m	8 M	박*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5-*, 4**호 (구산동, 진성아파트)	소로 2-376호선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소로 2-376호선	
					임*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6*, *층 (용두동)	소로 2-376호선	

[변경]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용두동	347-48	담장 및 웬스	H=2.2m	M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6*(용두동)
2	용두동	347-48	바닥	벽돌	M2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61(용두동)
3	용두동	347-48	화단 및 계단		M2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61(용두동)
4	용두동	347-48	뽕나무	H=2m, R=10cm	주	양*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61(용두동)
5	용두동	347-50	담당 및 웬스	H=2.2m	M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6	용두동	347-50	바닥	콘크리트	M2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7	용두동	347-50	화단 및 계단		M2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8	용두동	347-50	복숭아나 무	H=2m, R=12cm	주	배*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 1**호 (용두동)

고양시 공고 제2025-2786호

도시계획시설[중로2-원1호선 외 1개노선(박재궁취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476호(2024. 12. 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3-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2-원1호선 외 1개노선(박재궁취락)]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중로2-원1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97-8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65-7번지

○ 소로2-286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3-10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5-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박재궁취락(중로2-원1호선 외 1개) 도로확포장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원1	15 ~18	국지 도로	1,160	주교동 297-8	주교동 554-4	일반도 로	-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	
금회 시행	중로	2	원1	10 ~15	국지 도로	287	주교동 297-8	주교동 365-7	일반도 로	-	-	
결정	소로	2	286	8 ~15	집산 도로	642	주교동 249-8	주교동 275-5대	일반도 로	-	고양시 고시 제2002-39호	
금회 시행	소로	2	286	8 ~15	집산 도로	85	주교동 273-10	주교동 275-5대	일반도 로	-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목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목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주교동	533-23	도	438	243	국	기획재정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저로 1가)(고양시지부)	근저당권	
2	주교동	273-2	도	96	12	공	고양시				
3	주교동	273-10	도	150	87	공	고양시				
4	주교동	274-18	전	370	370	공	고양시				
5	주교동	273-13	도	248	245	공	고양시				
6	주교동	273-14	도	294	50	공	고양시				
7	주교동	274-5	전	27	27	공	고양시				
8	주교동	275-4	도	50	50	공	고양시				
9	주교동	274-1	대	231	93	공	고양시				
10	주교동	274-8	도	26	1	공	고양시				
11	주교동	274-6	도	8	1	공	고양시				
12	주교동	533-22	도	92	18	국	기획재정부				
13	주교동	297-8	도	382	3	공	고양시				
14	주교동	275-30	도	20	20	공	고양시				
15	주교동	275-21	도	31	25	공	고양시				
16	주교동	275-22	도	158	6	공	고양시				
17	주교동	297-8	도	382	30	공	고양시				
18	주교동	533-22	도	92	12	국	기획재정부				
19	주교동	275-22	도	158	22	공	고양시				
20	주교동	275-28	도	11	11	공	고양시				
21	주교동	275-10	도	8,591	14	공	고양시				
22	주교동	275-19	도	13	12	공	고양시				
23	주교동	533-24	도	963	292	국	기획재정부				
24	주교동	297-14	전	746	746	공	고양시				
25	주교동	275-15	전	25	16	공	고양시				
26	주교동	275-20	도	81	76	공	고양시				
27	주교동	297-5	답	612	563	공	고양시				
28	주교동	297-7	도	11	8	공	고양시				
29	주교동	302-8	도	46	23	이○란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3**				
						김○배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3**				
						김○배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3**				
30	주교동	297-2	도	43	43	공	고양시				
31	주교동	300-2	도	56	49	공	고양시				
32	주교동	300-5	답	34	21	공	고양시				
33	주교동	298-3	도	116	116	공	고양시				
34	주교동	298-5	도	258	258	공	고양시				
35	주교동	298-13	답	258	258	공	고양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6	주교동	298-14	답	18	18	공	고양시				
37	주교동	365-3	도	10	10	김○일	고양시 주교동 303-0				
						김○성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000				
38	주교동	365-4	도	178	178	공	고양시				
39	주교동	365-11	답	167	167	공	고양시				
40	주교동	353-3	도	1,626	298	공	고양시				
41	주교동	365-7	도	23	23	공	고양시				
						김○성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000				
42	주교동	365-10	답	3	3	공	고양시				

○ 지장물 조서(총괄) (변경없음)

구분	단위	합계	비고
부속건물	㎡	56	
공작물1	EA	4	
공작물2	m	68	
한전주	EA	11	
채신주	EA	4	
신호등	EA	1	

- 부속건물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방향	구조	면적(㎡)	비고
1	주교동	297-1	좌	천막	20	
			좌	창고	21	
			좌	비닐하우스	15	

- 한전주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 (STA)	방향	전주번호	관리청	비고
1	주교동	0+03	좌	9231H821 39	한국전력	
2	주교동	0+019	좌	9231H831 40	한국전력	
3	주교동	0+060	좌	9231H321 41	한국전력	
4	주교동	0+005	좌	9231H841 42	한국전력	
5	주교동	0+034	좌	9231H942 42R1	한국전력	
6	주교동	0+059	좌	9231H951 42R2H1	한국전력	
7	주교동	0+097	좌	9231H961 42R2	한국전력	
8	주교동	0+150	좌	9331C061 42R3	한국전력	
9	주교동	0+193	좌	9331C071 42R4	한국전력	
10	주교동	0+230	좌	9331C181 42R5	한국전력	
11	주교동	0+274	좌	9331C192 42R6	한국전력	

- 체신주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 (STA)	방향	전주번호	관리청	비고
1	주교동	0+097	좌		KT	
2	주교동	0+200	좌		KT	
3	주교동	0+224	좌		KT	
4	주교동	0+240	좌		KT	

고양시 공고 제2025-2798호

도시계획시설[대로3-33호선(고양~광탄간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482호(2024. 12. 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덕양구 고양동 및 벽제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33호선(고양~광탄간 도로)]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연장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829-1번지 일원
- 종점: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4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대로3-33호선(고양~광탄간 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결정	대로	3	33	25~28	1,980		
금회시행	대로	3	33	13.5~25	580	10,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고양동	829-3	전	313	31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	고양동	839	전	52	6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 112동 7**호	이*근				
3	고양동	839-1	전	45	4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4	고양동	840	대	122	38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로 7*, 114동 1***호	시*식				
5	고양동	840-1	대	60	6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	고양동	842-1	도	33	3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7	고양동	786-3	도	894	894	국토교통부	국				
8	고양동	843	대	515	129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 112동 7**호	이*근				
9	고양동	843-1	대	67	67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0	고양동	959	천	36	3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1	고양동	844	천	59	16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 112동 7**호	이*근				
12	고양동	844-1	천	5	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3	고양동	922-1	대	73	7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4	고양동	931-1	대	36	3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5	고양동	935-1	도	13	1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6	고양동	936-1	도	111	111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7	고양동	946	도	175	17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8	고양동	945-1	도	84	8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9	고양동	957	도	122	122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8, 4** 동 3**	나*수				미등기
20	고양동	956	도	43	4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1	고양동	955-1	대	19	19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2	고양동	958	전	50	5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3	고양동	953-1	대	23	2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4	고양동	953-2	대	2	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5	고양동	954	도	24	2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6	고양동	960	전	165	16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7	고양동	971	도	39	39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8	고양동	1070-1	답	4	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9	고양동	1066-1	도	6	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0	고양동	1065-1	도	82	8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1	고양동	1067-2	천	21	21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2	벽제동	679-28	구	1,148	837	국토교통부	국				
33	벽제동	679-26	구	2,855	16	국토교통부	국				
34	벽제동	328-5	도	695	8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5	벽제동	703-5	구	5,168	1,323	국토교통부	국				
36	벽제동	702-2	도	1,371	733	국토교통부	국				
37	벽제동	435-8	답	8	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8	벽제동	435-7	도	28	2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9	벽제동	335-15	도	13	13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40	벽제동	335-13	대	31	31	국방부	국				
41	벽제동	335-14	대	484	484	국방부	국				
42	벽제동	447-3	도	40	40	국방부	국				
43	벽제동	447-6	도	26	26	국방부	국				
44	벽제동	447-5	답	394	233		경기도				
45	벽제동	447-9	답	68	6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46	벽제동	447-10	답	264	26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7	벽제동	443-5	답	1,474	398		경기도				
48	벽제동	447-4	답	36	36		경기도				
49	벽제동	447-8	대	22	2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0	벽제동	443-11	임	36	3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1	벽제동	443-10	임	233	150		경기도				
52	벽제동	443-2	전	1,169	3		경기도				
53	벽제동	679-90	잡	1	1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4	벽제동	산46-3	도	135	10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5	벽제동	433-10	임	307	30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6	벽제동	433-25	임	39	39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7	벽제동	434-6	전	426	426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8	벽제동	434-16	전	8	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9	벽제동	434-18	전	160	16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0	벽제동	434-7	도	227	227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1	벽제동	434-15	대	147	147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2	벽제동	433-26	대	78	78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3	벽제동	434-5	전	579	19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4	벽제동	434-10	전	130	13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5	벽제동	433-24	대	182	18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6	벽제동	434-20	대	24	2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7	벽제동	434-19	대	261	261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8	벽제동	438-11	대	92	92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69	벽제동	438-9	대	15	1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70	벽제동	438-2	전	47	10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71	벽제동	438-7	전	277	25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72	벽제동	438-6	대	191	52		경기도				
73	벽제동	438-10	대	64	64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총계				22,246	10,110						

고양시 공고 제2025-2804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2-137호(2022. 5. 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에 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031-8075-3144) 및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02-758-3581)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2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154kV 수색-은평T/L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0.588	9,266 (송전탑:689, 선하지:8,577)	고양시고시 제2021-166호 (2021.05.11.)	
금회 시행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0.588	9,266 (송전탑:689, 선하지:8,577)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길이	588m	고양시고시 제2021-166호 (2021.05.11.)	구분지상권설정 토지에 한함 (입체적 공중면적만 포함)
						폭	12~29m		
금회 시행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길이	588m	-	-
						폭	12~29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02-758-3581)

카.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송전탑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 명	
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	임야	142,834	6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7, 1008동 004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김O수	구분 지상 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0, 301동 002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장O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0, 100동 006호 (청담동, 삼환아파트)	장O규				

-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 명	
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7-1	답	1,233	1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 삼환아파트 100-006	장O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동부이촌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2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9-2	임야	26,310	139	전북 김제군 백산면 석교리 211	파평윤씨 영양군파 종중				
3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9-6	구거	1,173	278		국 (농림축산 식품부)				
4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4-9	임야	617	76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임야	1,290	12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7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	임야	142,834	6,4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7, 1008동 004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김O수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0, 301동 002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장O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0, 100동 006호 (청담동, 삼환아파트)	장O규				
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43	임야	21,789	6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1-18 대우멤버스카운티O차 004호	박O준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미합중국 00601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니트 2012 이스트 위터사이드드라이브 O20	데이비드O				

고양시 공고 제2025-2826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4-474호(2024. 12. 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시행 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 계획(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및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031-8075-441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928-3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 외 1개소)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12	30 ~43.7	주간선 도로	3,15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13-153호	
금회 시행	대로	2	12	30 ~42.25	주간선 도로	3,15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1	48	18 ~40.8	보조간 선도로	280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13-153호	
금회 시행	중로	1	48	18 ~40.8	보조간 선도로	140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일반 도로	-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목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목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031-8075-4413)

카.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대로2-12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용두동	928-3	천	92	92	건설부	국				
2	"	928-2	천	38	38	건설부	국				
3	"	573-12	답	10	10	고양시	공				
4	"	573-13	전	295	295	고양시	공				
5	"	564-4	도	16,454	16,454	경기도	공				
6	"	572-5	답	112	112	고양시	공				
7	"	572-2	전	26	26	고양시	공				
8	"	572-6	답	11	11	고양시	공				
9	"	573-11	답	147	147	고양시	공				
10	"	571-6	답	90	90	고양시	공				
11	"	570-22	전	181	181	고양시	공				
12	"	570-21	답	106	106	고양시	공				
13	"	570-23	답	44	44	고양시	공				
14	용두동	570-19	전	144	144	고양시	공				
15	"	569-2	답	125	125	고양시	공				
16	"	568-25	답	348	348	고양시	공				
17	"	568-30	천	28	28	고양시	공				
18	"	568-29	천	28	28	고양시	공				
19	"	921-20	도	5	5	건설부	국				
20	"	921-19	도	20	20	건설부	국				
21	"	921-18	도	48	48	건설부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2	"	585-3	천	16	16	고양시	공				
23	"	585-4	천	46	46	고양시	공				
24	"	921-2	도	365	365	국토교통부	국				
25	"	587-8	답	513	513	고양시	공				
26	"	587-1	도	6007	6007	경기도	공				
27	"	654-6	답	176	176	고양시	공				
28	"	588-9	전	157	157	고양시	공				
29	"	589-2	전	199	199	고양시	공				
30	용두동	652-52	답	43	43	고양시	공				
31	"	652-53	전	193	193	고양시	공				
32	"	652-56	천	145	145	고양시	공				
33	"	897-19	천	446	446	건설부	국				
34	"	590-38	천	26	26	고양시	공				
35	"	590-39	천	35	35	기획재정부	국				
36	"	590-7	천	53	53	건설부	국				
37	"	590-34	주	200	200	고양시	공				
38	"	590-9	답	80	80	고양시	공				
39	"	590-36	주	41	41	고양시	공				
40	"	623-2	답	291	291	고양시	공				
41	"	590-20	도	8,202	8,202	경기도	공				
42	"	622-60	대	38	38	고양시	공				
43	"	622-71	전	152	152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4	"	622-61	답	64	64	고양시	공				
45	"	622-65	답	38	38	고양시	공				
46	용두동	622-62	답	54	54	고양시	공				
47	"	622-64	답	27	27	고양시	공				
48	"	609-29	도	982	387	고양시	공				
49	"	613-1	도	27	19	고양시	공				
50	"	613-13	도	303	303	경기도	공				
51	"	613-12	도	9	9	경기도	공				
52	"	613-10	도	268	189	고양시	공				
53	"	613-2	도	63	63	경기도	공				
54	"	613-29	임	64	15	기획재정부	국				
55	"	613-30	임	55	52	기획재정부	국				
56	"	438-18	도	4	4	고양시	공				
57	"	913-7	도	1054	832	건설부	국				
58	"	913-11	도	4	4	건설부	국				
59	"	438-23	대	79	79	고양시	공				
60	"	438-22	도	3	3	고양시	공				
61	"	438-19	도	1	1	고양시	공				
62	"	437-5	도	5	5	기획재정부	국				
63	"	437-3	도	3	3	기획재정부	국				
64	용두동	437-6	도	30	30	기획재정부	국				
65	"	436-8	도	6	6	기획재정부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6	"	436-24	도	28	28	건설부	국				
67	"	436-22	도	26	26	국토교통부	국				
68	"	436-10	도	109	109	재정경제부	국				
69	"	436-3	도	18	18	기획재정부	국				
70	"	436-25	도	24	24	고양시	공				
71	"	436-9	답	42	42	경기도	공				
72	"	436-21	도	3	3	국토교통부	국				
73	"	434-2	전	22	22	기획재정부	국				
74	"	434-36	전	92	92	고양시	공				
75	"	573-14	답	184	184	건설교통부	국				
76	"	573-9	답	137	137	국토교통부	국				
77	"	565-10	답	39	39	건설교통부	국				
78	"	565-8	답	227	227	고양시	공				
79	"	564-2	답	179	179	고양시	공				
80	"	565-9	답	152	152	고양시	공				
81	용두동	571-7	답	182	182	고양시	공				
82	"	570-20	답	288	288	고양시	공				
83	"	567-1	답	73	73	고양시	공				
84	"	570-18	답	8	8	고양시	공				
85	"	570-24	답	105	105	고양시	공				
86	"	568-22	답	60	60	고양시	공				
87	"	568-21	답	10	10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88	"	568-23	답	12	12	고양시	공				
89	"	568-26	주	14	14	고양시	공				
90	"	568-27	주	69	69	고양시	공				
91	"	655-4	전	113	113	고양시	공				
92	"	568-19	답	31	31	고양시	공				
93	"	655-7	천	1	1	고양시	공				
94	"	655-6	천	47	47	고양시	공				
95	"	921-21	도	12	12	건설부	국				
96	"	921-22	도	39	39	건설부	국				
97	용두동	587-10	천	58	58	고양시	공				
98	"	587-9	답	307	307	고양시	공				
99	"	654-7	답	163	163	고양시	공				
100	"	588-10	전	98	98	고양시	공				
101	"	652-55	답	152	152	고양시	공				
102	"	652-51	전	115	115	고양시	공				
103	"	652-54	전	66	66	고양시	공				
104	"	627-2	천	160	160	고양시	공				
105	"	897-20	천	1	1	건설부	국				
106	"	590-35	천	2	2	건설부	국				
107	"	590-40	천	65	65	고양시	공				
108	"	590-37	답	279	279	고양시	공				
109	"	624-2	답	212	212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10	"	622-66	답	340	340	고양시	공				
111	"	622-67	답	367	367	고양시	공				
112	용두동	622-63	답	62	62	고양시	공				
113	"	622-70	답	130	130	고양시	공				
114	"	622-68	답	136	136	고양시	공				
115	"	622-69	답	110	102	고양시	공				
116	"	612-10	답	289	60	고양시	공				
117	"	612-11	도	879	149	고양시	공				
118	"	613-4	도	27	10	고양시	공				
119	"	913-4	도	111	24	건설부	국				
120	"	424-41	도	119	16	건설부	국				
121	"	424-38	도	177	121	경기도	공				
122	"	424-46	도	73	53	고양시	공				
123	"	424-25	도	590	590	서울특별시	공				
124	"	424-1	도	112	112	경기도	공				
125	"	424-31	답	707	707	경기도	공				
126	"	424-39	답	904	874	고양시	공				
127	"	434-20	도	736	736	경기도	공				
128	용두동	434-32	답	107	107	고양시					
							공				
129	"	434-33	답	61	61	고양시	공				
130	"	433-6	도	3,631	3,631	서울특별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31	"	434-39	답	1	1	고양시	공				
132	"	434-37	답	8	8	고양시	공				
133	"	434-38	답	7	7	고양시	공				
134	"	433-12	답	29	29	고양시	공				
135	"	897-17	구	2,049	2,049	건설부	국				
136	"	897-22	구	396	396	건설부	국				
137	"	914-7	도	11	11	국토교통부	국				
138	"	914-4	도	2	2	건설부	국				
139	"	430-7	전	46	46	경기도	공				
140	"	430-14	전	24	24	국방부	국				
141	"	432-462	도	35	35	국방부	국				
142	"	430-13	도	61	61	건설부	국				
143	"	430-16	도	282	282	국방부	국				
144	용두동	914-8	도	1,205	1,205	국토교통부	국				
145	"	432-461	도	102	102	경기도	공				
146	"	432-217	전	1	1	고양시	공				
147	"	0-2	가	-	4	-	미등기				
148	"	429-4	전	11	11	경기도	공				
149	"	429-18	도	952	952	국토교통부	국				
150	"	429-19	도	534	534	경기도	공				
151	"	429-16	전	139	139	고양시	공				
152	"	429-8	도	1,131	1,131	서울특별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53	"	429-17	전	74	74	고양시	공				
154	"	915-3	도	1	1	건설부	국				
155	"	915-2	도	57	57	국토교통부	국				
156	"	361-256	임	46	46	경기도	공				
157	"	432-133	도	24	24	서울특별시	공				
158	"	432-408	전	38	38	고양시	공				
159	용두동	432-336	전	4	4	고양시	공				
160	"	432-431	도	5	5	고양시	공				
161	"	432-448	전	4	4	고양시	공				
162	"	432-337	전	1	1	고양시	공				
163	"	432-432	도	8	8	고양시	공				
164	"	361-336	임	3, 103	3, 103	경기도	공				
165	"	432-434	전	27	27	고양시	공				
166	"	432-338	전	12	12	고양시	공				
167	"	432-339	전	4	4	고양시	공				
168	"	432-435	전	18	18	고양시	공				
169	"	432-436	전	3	3	고양시	공				
170	"	432-433	도	3	3	고양시	공				
171	"	432-134	도	7	7	서울특별시	공				
172	"	432-135	도	19	19	서울특별시	공				
173	"	432-136	도	128	128	서울특별시	공				
174	"	432-137	도	230	230	서울특별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75	용두동	432-444	전	42	42	고양시	공				
176	"	432-257	도	1,161	1,161	서울특별시	공				
177	"	432-409	전	9	9	고양시	공				
178	"	432-410	전	59	59	고양시	공				
179	"	432-138	도	144	144	서울특별시	공				
180	"	432-411	전	32	32	고양시	공				
181	"	432-139	도	101	101	서울특별시	공				
182	"	432-446	도	4	4	고양시	공				
183	"	432-441	도	19	19	고양시	공				
184	"	432-140	도	170	170	서울특별시	공				
185	"	432-443	전	3	3	고양시	공				
186	"	432-141	도	99	99	서울특별시	공				
187	"	432-142	도	54	54	서울특별시	공				
188	"	434-23	도	597	597	경기도	공				
189	"	434-17	답	3	3	경기도	공				
190	용두동	434-19	답	101	101	경기도	공				
191	"	424-42	천	18	18	건설부	국				
192	"	897-21	구	236	236	건설부	국				
193	"	434-12	천	96	96	경기도	공				
194	"	425-7	답	1	1	경기도	공				
195	"	425-13	답	5	5	경기도	공				
196	"	425-16	답	112	112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97	"	425-17	답	1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길 ** ***동***호	김*신				
198	"	425-15	답	518	518	경기도	공				
199	"	425-4	도	85	85	서울특별시	공				
200	"	426-1	도	972	972	서울특별시	공				
201	"	426-8	도	5	5	경기도	공				
202	"	426-9	도	1,783	1,783	경기도	공				
203	"	428-14	전	14	14	고양시	공				
204	"	429-10	도	566	566	서울특별시	공				
205	용두동	428-12	전	85	85	고양시	공				
206	"	428-1	전	34	34	고양시	공				
207	"	428-13	전	166	166	고양시	공				
208	"	429-11	전	16	16	고양시	공				
209	"	914-6	도	8	8	건설부	국				
210	"	362-14	전	38	38	고양시	공				
211	"	362-7	전	80	80	경기도	공				
212	"	362-15	전	118	118	고양시	공				
213	"	362-8	전	365	365	경기도	공				
214	"	362-9	전	73	73	경기도	공				
215	"	362-16	도	2	2	고양시	공				
216	"	915-4	도	2	2	건설부	국				
217	"	361-329	구	3	3	고양시	공				
218	용두동	361-226	구	2	2	경기도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19	"	361-214	도	3,086	3,086	경기도	공				
220	"	361-313	전	407	407	고양시	공				
221	"	361-333	전	23	23	고양시	공				
222	"	361-312	전	262	262	고양시	공				
223	"	361-83	전	54	54	고양시	공				
224	"	361-327	전	71	71	고양시	공				
225	"	361-314	전	203	203	고양시	공				
226	"	361-86	전	19	19	고양시	공				
227	"	361-5	도	175	175	-	미등기				
228	"	361-328	대	18	18	고양시	공				
229	"	361-189	도	107	107	경기도	공				
230	"	361-315	대	6	6	고양시	공				
231	"	361-181	도	19	19	경기도	공				
232	"	361-87	도	33	33	경기도	공				
233	"	361-330	도	94	94	경기도	공				
234	용두동	361-360	도	99	99	고양시	공				
235	"	361-323	답	14	14	고양시	공				
236	"	361-359	도	180	180	-	미등기				
237	"	361-326	전	136	136	고양시	공				
238	"	361-321	전	216	216	고양시	공				
239	"	361-322	답	13	13	고양시	공				
240	"	361-320	답	131	131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41	"	361-319	전	94	94	고양시	공				
242	"	361-19	도	4,588	4,588	경기도	공				
243	"	361-167	도	35	35	서울특별시	공				
244	"	361-1	전	70	70	고양시	공				
245	"	361-165	도	81	81	서울특별시	공				
246	"	361-168	도	2,213	2,213	서울특별시	공				
247	"	432-143	도	2	2	서울특별시	공				
248	"	432-412	대	98	98	경기도	공				
249	"	432-226	도	288	288	경기도	공				
250	용두동	432-233	전	27	27	경기도	공				
251	"	432-147	도	108	108	기획재정부	국				
252	"	432-231	도	349	349	경기도	공				
253	"	432-149	도	3,912	3,912	서울특별시	공				
254	"	432-240	답	235	235	경기도	공				
255	"	432-419	대	42	42	고양시	공				
256	"	432-442	대	4	4	고양시	공				
257	"	432-70	도	716	716	경기도	공				
258	"	432-420	도	19	19	고양시	공				
259	"	432-395	도	1	1	고양시	공				
260	"	432-278	도	43	43	고양시	공				
261	"	432-423	대	27	27	고양시	공				
262	"	933-10	구	1,741	1,741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63	"	432-165	도	472	472	서울특별시	공				
264	"	432-438	도	69	69	경기도	공				
265	용두동	432-164	도	38	38	경기도	공				
266	"	432-428	도	19	19	경기도(고양시)	공				
267	"	산30-58	도	893	893	서울특별시	공				
268	"	432-440	도	153	153	경기도	공				
269	"	432-421	전	38	38	고양시	공				
270	"	432-168	도	1,126	1,126	서울특별시	공				
271	"	2-137	임	240	240	기획재정부	국				
272	"	432-422	도	235	235	경기도	공				
273	"	432-105	도	2,136	2,136	서울특별시	공				
274	"	2-117	임	6	6	경기도	공				
275	"	산30-55	도	8,412	8,412	서울특별시	공				
276	"	2-115	임	69	69	경기도	공				
277	"	361-318	전	18	18	고양시	공				
278	"	361-317	전	13	13	고양시	공				
279	"	361-331	전	76	76	고양시	공				
280	"	361-316	대	6	6	고양시	공				
281	"	361-332	전	11	11	고양시	공				
282	용두동	432-425	대	177	177	고양시	공				
283	"	432-146	잡	39	39	경기도	공				
284	"	432-447	전	4	4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85	"	432-148	도	86	86	기획재정부	국				
286	"	432-445	대	11	11	고양시	공				
287	"	432-413	대	3	3	고양시	공				
288	"	432-235	잡	15	15	경기도	공				
289	"	432-417	구	16	16	기획재정부	국				
290	"	432-416	답	40	40	고양시	공				
291	"	432-418	전	22	22	고양시	공				
292	"	432-427	창	23	23	고양시	공				
293	"	432-449	답	15	15	고양시	공				
294	"	432-426	도	1,701	1,701	경기도	공				
295	용두동	432-437	전	186	186	경기도	공				
296	"	432-450	임	34	34	고양시	공				
297	"	432-415	전	80	80	고양시	공				
298	"	432-451	임	5	5	고양시	공				
299	"	432-452	임	2,362	2,362	경기도	공				
300	"	432-170	답	146	146	경기도	공				
301	"	2-116	임	469	469	경기도	공				
302	"	2-114	임	11	11	고양시	공				
303	"	432-429	잡	39	39	경기도	공				
304	"	432-173	도	1,190	1,190	경기도	공				
305	"	432-424	전	61	61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306	"	2-111	임	2,339	2,339	경기도	공				
307	"	2-107	전	403	403	고양시	공				
308	"	2-110	임	1,508	1,508	경기도	공				
309	"	2-113	임	189	189	고양시	공				
310	용두동	2-112	임	337	337	문화재청	국				
311	"	2-109	임	366	366	문화재청	국				
312	"	1-83	임	76	76	고양시	공				
313	"	2-61	임	498	498	경기도	공				
314	"	산30-59	도	260	260	서울특별시	공				
315	"	1-19	도	184	184	경기도	공				
316	"	1-66	잡	165	165	고양시	공				
317	"	1-75	잡	8,174	8,174	경기도	공				
318	"	1-67	잡	390	390	고양시	공				
319	"	1-84	임	63	63	고양시	공				
320	"	1-85	임	29	29	고양시	공				
321	"	1-80	임	6,082	6,082	경기도	공				
322	"	2-136	도	485	485	고양시	공				
323	"	4-3	도	326	326	고양시	공				
324	"	2-108	전	19	19	고양시	공				
325	용두동	4-8	임	758	758	고양시	공				
326	"	1-43	임	1,779	1,779	경기도	공				
327	"	1-81	임	1,058	1,058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328	"	1-82	임	2	2	고양시	공				
329	"	1-45	임	1,533	1,533	경기도	공				
330	"	1-62	전	225	225	고양시	공				
331	"	0-10	가	-	202	-	미등기				
332	"	1-23	답	158	158	경기도	공				
333	"	2-64	임	154	154	경기도	공				
334	"	1-63	전	175	175	고양시	공				
335	"	1-64	전	499	499	고양시	공				
336	"	1-24	답	681	681	경기도	공				
337	"	1-68	답	158	158	국방부	국				
338	"	1-29	잡	165	165	경기도	공				
339	"	1-69	답	142	142	고양시	공				
340	용두동	1-30	답	197	197	경기도	공				
341	"	1-65	대	20	20	고양시	공				
342	"	1-25	답	108	108	경기도	공				
343	"	1-76	전	5	5	고양시	공				
344	"	1-77	전	4	4	고양시	공				
345	"	1-71	답	255	255	경기도	공				
346	"	1-70	전	136	136	경기도	공				

(중로1-48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용두동	613-11	도	8	8	고양시	공				
2	"	913-4	도	111	87	건설부	국				
3	"	612-11	도	879	730	고양시	공				
4	"	613-10	도	268	79	고양시	공				
5	"	613-4	도	27	17	고양시	공				
6	"	612-10	답	289	229	고양시	공				
7	"	622-69	답	110	8	고양시	공				
8	"	609-15	도	110	110	경기도	공				
9	"	609-29	도	982	595	고양시	공				
10	"	609-28	도	10	10	고양시	공				
14	"	424-45	도	11	11	경기도	공				
15	용두동	424-40	도	9	9	경기도	공				
16	"	424-41	도	119	103	건설부	국				
17	"	424-38	도	177	56	경기도	공				
18	"	424-39	답	904	30	고양시	공				
19	"	424-46	도	73	20	고양시	공				
20	"	613-30	임	55	3	기획재정부	국				
21	"	613-29	임	64	49	기획재정부	국				
22	"	613-31	도	67	67	국방부	국				
23	"	610-34	임	29	29	고양시	공				
24	"	613-1	도	27	8	고양시	공				
25	"	613-28	도	223	223	경기도	공				
26	"	913-7	도	1054	222	건설부	국				
27	"	610-36	도	58	58	경기도	공				